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21 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6
운 영 성 과 표	8
주 석	9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회 귀중

2020년 02월 13일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석 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대한민국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기타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법인은 당기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의거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경기 수원 영통 신원로 88, 104 동 201 호(신동, 디지털엠패이어 2)

한음공인회계사 감사반

공인회계사 최 승 완



공인회계사 김 재 준



공인회계사 남 기 성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제 21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와 주석은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영훈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0

(전 화) 02-783-2291

재무상태표

제21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제 21 (당)기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유동자산	5,785,973,918	-
(1)당좌자산	5,785,973,918	-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5,703,005,429	-
2.미수금	436,840	-
3.선급금	80,658	-
4.선급비용	2,075,779	-
5.당기법인세자산	1,317,540	-
6.기부물품(주석4)	79,057,672	-
II.비유동자산	124,104,450	-
(1)유형자산(주석5)	84,104,450	-
1.시설장치	170,531,970	-
감가상각누계액	(130,214,970)	-
2.차량운반구	272,376,630	-
감가상각누계액	(270,487,590)	-
3.집기비품	83,053,560	-
감가상각누계액	(41,155,150)	-
(2)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
1.임차보증금	40,000,000	-
자 산 총 계	5,910,078,368	-
부 채		
I.유동부채	209,651,138	-
1.미지급금	196,075,378	-
2.예수금	13,575,760	-
부 채 총 계	209,651,138	-
순 자 산		

과 목	제 21 (당기)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기본순자산(주석6,7)	78,300,000	-
1. 기본순자산	78,300,000	-
II.보통순자산(주석7)	5,622,127,230	-
1.미처분이익잉여금	5,622,127,230	-
순자산 총계	5,700,427,230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5,910,078,36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21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제 21 (당)기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사업수익	18,795,884,784	-
1.기부금수익(주석6,11,12)	18,274,877,133	-
2.보조금수익	500,892,750	-
3.회비수익	11,300,000	-
4.투자자산수익	8,814,901	-
II.사업비용(주석8,12)	21,763,446,033	-
1.사업수행비용	14,021,689,923	-
-해외사업비(주석11)	10,377,797,410	-
-국내사업비	3,643,892,513	-
2.일반관리비용(주석10,12)	1,420,929,385	-
3.모금비용(주석11)	6,320,826,725	-
III.사업이익(손실)	(2,967,561,249)	-
IV.사업외수익	15,724,466	-
1.외환차익	480,842	-
2.외화평가이익	99,982	-
3.잡이익	15,143,642	-
V.사업외비용	943,916	-
1.외환차손	126,707	-
2.외화평가손실	814,369	-
3.잡손실	2,840	-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9)	8,814,901	-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9)	8,814,901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2,952,780,699)	-
IX.법인세등	-	-
X.당기운영이익(손실)	(2,952,780,69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1 (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1. 일반사항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이하 "법인")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가난, 재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구제와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사랑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건설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7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주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와 구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의료에 관한 사업
- 개발, 연구, 교육에 관한 사업
- 생활문화, 환경보건에 관한 사업
-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법인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기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는 상기 기준의 부칙 제3조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4,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상증세법상 회계감사의무 또는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므로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됩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식, 순자산의 구분, 자산·부채의 평가 및 일부 주석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상이합니다.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익인식기준

(1) 기부금(후원금)수익

- 기부금의 수익인식시점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부금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부약정을 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부자가 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부 결제하는 시점에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기부 결제시점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합니다.

- 현물기부금의 공정가치 평가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한 물품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2) 보조금수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받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3) 회비수익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산수익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사업 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으로 표시하며,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및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1)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은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수행활동이나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

모금비용은 모금홍보, 모금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기부물품

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기부물품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기부받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생산력 증대 또는 내용연수 연장 등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가타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6. 퇴직급여

법인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미달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동 미달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

법인은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록하고 있는 바, 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사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재무상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손실)은 사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바,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신고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담할 법인세 등은 없습니다.

2-9. 우발부채

법인은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로만 그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해당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그 내용을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내역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5,654,045
	외화예금	48,960
	합계	5,703,005

4.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은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역	금액	비고
개인기부물품	10,020	곽태정 외
법인기부물품	3,657,4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합계	3,667,431	

5. 유형자산

당기 중 법인의 유형자산은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동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공익회계기준도입	조정후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시설장치	136,427	(62,005)	74,422	-	-	(34,105)	40,317
차량운반구	107,216	(104,845)	2,370	-	-	(481)	1,889
집기비품	46,036	(8,080)	37,956	18,514	(105)	(14,467)	41,898
합계	289,679	(174,930)	114,749	18,514	(105)	(49,053)	84,104

- 당기말 현재 법인은 보유 차량운반구에 대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기본순자산

당기말 현재 법인의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공정가치는 장부가액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내역	취득원가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78,300	78,300

7. 순자산의 변동

당기 중 법인의 순자산은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동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잉여금	
당기초	100,000	9,327,594	-
회계기준변경	(21,700)	(752,686)	-
수정후 순자산	78,300	8,574,908	-
당기운영이익(손실)	-	(2,952,781)	-
당기말	78,300	5,622,127	-

8.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법인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13,387,386	1,985,791	519,264	5,871,005	21,763,446
사업수행비용	13,387,386	634,304	-	-	14,021,690
일반관리비용	-	702,419	519,264	199,247	1,420,929
모금비용	-	649,069	-	5,671,758	6,320,827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계상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되어야 합니다.

당기말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설정년도	설정액	지출액
2015	3,133	3,133
2016	3,619	3,619
2017	4,488	4,488
2018	4,046	4,046
2019	8,815	8,815
합계	24,100	24,100

10.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

당기 법인의 일반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급여	510,618
퇴직급여	40,064
복리후생비	75,471
교육비	21,049
소모품비	26,202
통신비	50,271
도서인쇄비	2,382
차량유지비	7,493
여비교통비	14,460
접대비	5,429
회의비	7,307
세금과공과	2,331
찬조금	35,630
우편료	365
지급수수료	54,870
임차료	462,718
보험료	55,216
감가상각비	49,053
합계	1,420,929

11. 주요 거래내역

당기 중 법인의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외사업비	4,237,114	해외물품지원비
	기부금수익	1,402,833	법인물품기부금
(주)헬퍼스하이	모금비용	2,507,141	업무위탁수수료

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기 중 법인과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당기말 현재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수익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	채권	채무
대표이사	100,000	-	-	-	-
기타특수관계자	952,500	619,195	35,630	-	-
합계	1,052,500	619,195	35,630	-	-

13. 약정사항

13-1. 당기말 현재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 등과의 협약에 의한 국제구호사업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149,47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3-2. 당기말 현재 법인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없습니다.

14. 재무제표의 확정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0일에 열릴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